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Revising the Energy
Utilization Act

김 태 곤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목 차

1.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배경
과 특징
 - 가. 「열관리법」의 제정 · 시행
 -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 시행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취지와 주
요 개정내용
 - 가. 개정취지
 - 나. 주요 개정내용
 - 다. 개정 추진 일정

1.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배경과 특징

가. 「열관리법」의 제정 · 시행

1973년 말 중동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제 1 차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정부에서는 먼저 사치성
광고용 네온싸인의 설치규제, 텔레비전 방영시
간의 단축, 차량 · 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행회수
단축, 유통점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에 의한 단순 에너지 소비억제와 절약
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행정규
제에 의한 일시적 · 산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4일자로 「열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일정기준량 이상의 연료 또는 열 사용자를
열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동업체는 열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열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
였으며

② 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연료 또는 열을 사용하여 만드는 제
품의 단위당 연료 또는 열의 사용목표량(목표원

단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연료사용기기의 효율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료사용기기 제조업자는 제조면허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량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으며¹⁾

④ 열관리정책의 추진모체로서 「열관리협회」를 설립토록 하는 한편, 열관리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열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7월 24일 석탄환산 700톤 이상의 연료 또는 열사용업체 1,549개 업체를 열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관리하는 한편, 이어서 강판 등 33개 주요 공산품에 대하여 제품별 목표원단위를 설정, 공고하였다.

또한 열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열관리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도출함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열관리법」은 그 추진대상에 있어서 산업부문 연료 및 열의 관리와 이의 효율적 이용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정·상업, 수송부문 및 전기분야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행정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시행

주 1) 한편 보일러 등 원동기의 제작, 시공 등에 관하여는 계속 「원동기단속법」에서 관掌하여 왔으나 1975년 12월 31일자로 동법을 「열관리법」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연료사용기기에 대한 적용법규가 일원화되었다.

1974년 1월 4일 제정, 시행된 「열관리법」은 그 이후 1970년대의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정책을 이끌어 온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대상범위 및 정책수단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한 국가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이끌어 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사태로 발생된 1979년의 제 2차 석유파동은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정책의 필요성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즉, 종래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억제에 의한 단순절약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1979년 12월 28일 종래의 「열관리법」을 폐지하고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 에너지 절약시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종전의 「열관리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표 1 참조).

① 「열관리법」의 목적 및 대상은 석탄을 비롯한 연료의 유효한 이용인데 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석유·석탄·전기·신재생 에너지 등 전반적인 에너지(단, 원자력은 제외)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 에너지가 확대되었다.

② 「열관리법」의 경우 산업부문·에너지 관리에 국한한 데 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을 포함한 전부문으로 그 관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한편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열관리법」은 행정규제단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세제·금·용상의 유인시책도 아

을려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하여도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종합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열공급사업(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 「열공급 사업법」, 미국의 경우 「공공 유틸리티규제정책법」(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과 같이 별개의 법으로 독립해 있는 것과 대조

적이다.

② 현행 법은 에너지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 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에너지 수급을 조정하거나 제한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도 일본의 경우 비상입법으로서 「석유수급적정화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세제지원 등과 같은 일부 유인시책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규제를 동시에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에너지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차발적 노력을 중시하고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각종 가이드 라인의 제정이라든가 지도·조언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금융

〈표 1〉 「熱管理法」과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比較

項 目	熱 管 理 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制 定	1974. 1. 4	1979. 12. 28
· 目 的	燃料 및 热의 有效한 利用을 도모	에너지의 合理的인 利用을 도모
· 管 理 對 象	產業部門의 燃料, 热	全部門의 燃料, 热 및 電氣
· 管 理 對 象 者	年間 石炭換算 700톤 以上的 燃料	年間 石油換算 250톤 以上的 燃料 및 热
指 定 要 件	또는 热使用者	使用者, 契約電力 500kW 이상으로서 年間 100만kWh 이상의 전기使用者
· 基本計劃 및 目標	-	動資部長官이 樹立, 에너지 센서스 실시
· 에너지使用制 限措置	-	에너지 需給上 不得已할 경우 가능함
· 政 策 手 段	行政規制	行政規制와 稅制金融上 支援
· 集 團 에 너 지 供給	-	集團에 너지 供給計劃 및 热供給事業者의 要件 등에 대해 規定
· 政 策 基 金	-	에너지利用合理化 基金
· 事 業 推 進 母 体	熱管理協會	에너지管理公團
· 罰 則	最高 2年以下の懲役 또는 200만 원 以下の 罰金	最高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세제를 주로 활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행 법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취지 와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취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1979년 12월 28일자로 제정, 시행된 이래 그동안 2 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을 통하여 법시행상의 미비점이 일부 보완, 운영되어 왔으나, 보다 실효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실효성이 미흡한 현행 제반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 자율경제 체제의 정착에 부응하여 종래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각종 강제적, 규제위주적 시책들을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사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현행 규정중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행 제반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으로써 향후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타율적·강제적인 명령제도를 권고제도로 개선

현행 법에서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리지도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사용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관리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 관리진단 결과 당해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시행 결과 이러한 타율적·강제적인 에너지 관리진단 명령제도 및 시정명령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각각 에너지 관리진단 권고제도와 시정권고제도로 개선하여 개별 에너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손실요인을 시정해 나가도록 권고·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2) 운용성과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의 조정·보완

① 목표원단위 설정·관리제도의 보완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목표원단위)을 각 업체별 및 제품별로 설정하여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일정기간내에 달성토록 함으로써 산업체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자 현행 법에서는 이러한 「목표원단위 설정·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2년~'87년 동안 총 549개 업체 1,020개 품목에 대하여 목표원단위를 설정·관리하여 왔으나, 생산공정 및 기술의 다양성 때문에 정부에서 목표원단위를 일률적으로 책정·관리하는 데는 기술능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즉, 목표달성 기간중 생산제품, 투입원료 또는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공정의 변화 등으로 목표치의 설정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이의 계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목표치 달성을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 평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강제적·타율적인 에너지 목표원단위의 설정·관리는 지양하는 대신,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관리해 나갈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이의 달성을 필요로 하는 자금 및 기술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② 목표주행거리 설정·관리제도의 개선

한편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량 등 수송수단별로 단위연료량에 대하여 목표주행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주행거리를 미달한 차량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그 미달된 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벌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3년 5월 11일자로 차량의 단위연료당 목표주행거리(km/l)를 설정, 고시하고 차량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달성토록 한 바 있으나 벌과금을 부과한 예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목표주행거리 미달시 정부가 벌과금을 부과, 징수하는 현재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미달사실을 공표하여 소비자의 구매수요를 억제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3)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시설의 신·증설자로 하여금 미리 그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사용의 타당성이나 그 기술적 합리성 여부를 검토

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제도의 운용결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설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행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신축건물의 경우,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종복규제를 배제하고자 하며,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연공급사업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경우도 각각 관계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종규제는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② 겸사의 면제·생략 가능범위 확대

현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겸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제조겸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겸사대상 기기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겸사의 생략·면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제조겸사 뿐만 아니라 설치겸사 및 제속사용겸사에 있어서도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겸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면제할 수 있도록 한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열사용기기의 계속사용을 위한 겸사(계속사용겸사) 중 안전겸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성능겸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기기를 정비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사대상기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4) 시행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용도확대

현행 법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차관, 석유류 특별소비세로부터의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을 설치, 운용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30억원, 47.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동기금을 조성,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대체 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 집단 에너지 공급,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으며 1987년 말 현재 동기금의 조성금액은 13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 기금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취득과 대여사업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② 권한의 이양 및 위탁규정 보완

그동안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사실상 위임, 운영되어온 각종 권한을 도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이양하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③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면서도 현재 시행규칙·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은 법에 근거규정 마련

특정 열사용 기자재중 겸사대상기기가 아닌 보일러(주택용·소형건물용)의 불량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겸사대상기기가 아닌 보일러(비겸사대상 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시공업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설치·시공확인 업무에 따르는 수수료를 시공업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²⁾

아울러 도지사로부터 비겸사대상 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시설과 기술요원을 갖추어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할 것이다.

④ 벌칙규정의 미비점 보완

법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에너지 관리자 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겸사대상기기의 계기, 사용·중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벌금형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각종 신고·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처분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5)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시행하기 곤란한 조항의 삭제

현행 규정중 시·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 에너지 사용 등의 제한조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은 대폭 삭제·정비할 계획이다.

다. 개정추진 일정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을 금년 10월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년말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초에 법개정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보안·정비한 후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주 2) 비겸사대상 보일러에 대한 설치·시공확인 업무는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